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61
----------	------

제출연월일 2014. 6.
제출자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의 범죄예방과 범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는 사항(안 제10조)
- 마.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 및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방침결정 : 2014. 3. 24
-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 제4조 3항 협의회 구성중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아동·여성·노인분야 전문가 위원 위촉 의견이 있어 반영
- 마. 입법예고 : 2014. 4. 1. ~ 2014. 4. 21.(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범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의 범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범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중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2일 ·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1)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안번호 제1061호)
(2014년 6월 16일 상정의결)
- 2)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안번호 제1061호)
(201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최해근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지역의 범죄예방과 범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2)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는 사항(안 제10조)
- 5)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 및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검토보고자 : 김규협 전문위원)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 위원장은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 당연직 위원은 중구청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중부소방서장이 되고,
 - 위촉직 위원은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범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 간사는 울산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 실무협의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의 법률적인 근거를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안건번호 10-1054, 2010.7.5)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